

[재] 충남연구원 수시감사 1차 결과보고

- ◇ 충남연구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

I 감사 근거 및 개요

□ 감사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22조
- 「충남연구원 정관」 제18조
- 「충남연구원 운영규정」 Ⅲ-7 감사규정

□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'20. 11. 16.(월) ~ 11. 20(금) / 5일간
※ 상반기 정기감사 실시 : 6.8.~6.12. / 5일간
- 감사반 : 총 5명, 정책관리팀(총괄, 3명) + 감사위원회(지원, 2명)
- 감사범위 : 원장이 요청한 사항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감사방법 : 실지감사
- 감사내용 : (정책관리팀) 예산, 복무, 기타사항, (감사위원회) 인사

□ 1차 감사결과 지적사항 : 1건

- 예산(보수) 분야 : 관리업무수당 부당수급

□ 앞으로

- 수시감사 종합 결과보고 및 연구원 회신 : '21. 1월중
- '21년도 제1차 충남연구원 정기이사회 종합감사 보고 : '21. 3월

II

지적사항 (관리업무수당 부당수급)

□ 현 황

-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면 관리업무수당은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9%를 지급
- 충남연구원도 이를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 4급 이상에 준하는 관리1급, 관리2급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여 왔음
 - 「연봉제 운영지침」에 의거 연봉 외 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함
 - ※ 관리업무수당 지급 근거 : 「충남연구원 보수규정」('16.12.20. ~ '19.12.20)
 - ※ 연봉 외 급여 지급 근거 : 「연봉제 운영지침」('17.3.15. ~ '20.1.21)

□ 문 제 점

- '17년 관리수당 신설 후 매년 내부결재를 통해 월봉급액의 9%를 산출, 연봉 외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나,
 - 「연봉제 운영지침」의 규정에 반하여 내부결재나 산출 근거 없이 기본급(연봉)에 포함하여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함
 - 관리업무수당 지급 시점인 '17년도 연봉계약액과 실 연봉지급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관리업무수당을 간접 계산하면 월 456천원*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

* (93,136천원-87,660천원)/12개월 = 456천원/월

< 관리1급(이용로) 계약 연봉액 및 실수령액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연 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
연봉액 (계약)	82,036	86,340	87,660	93,136	94,831	96,301
실연봉액	82,036	86,340	93,136	93,136	94,831	96,301

< 관리업무수당 추정액 >

(단위 : 천원)

연 도	2017	2018	2019	2020
임금인상률	-	0%	1.82%	1.55%
관리업무수당	456,300	456,300	493,716	501,368

- 관리업무수당은 보수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국내연수*로 보직이 없는 기간 및 지급 근거가 폐지(보수규정 개정 - 2019.12월)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함

* 인사발령-국내·해외교육훈련(총무과-3679/2018.12.21.)

- '19년 국내연수('19.1 ~12월) 기간 및 '20년('20.1 ~9월) 기 지급된 관리업무수당 전액(10,437천원) 환수조치 필요
-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'20년('20.1 ~9월) 기 지급된 관리업무수당에 대하여 월 487,000원으로 산정하여 '20.10월부터 반납 조치 중으로
- '19년 국내연수('19.1 ~12월) 기간에 대하여도 추가 반납 조치 필요

조치할 사항 **시정, 권고**

◆ (시정) 부적절하게 지급된 관리업무수당 반납(5,924천원*)

* 산출기초 : 493,716원×12개월 = 5,924,292원

◆ (권고)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및 충남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지출 등 업무 규정 준수

Ⅲ 향후 추진계획

- 충남연구원 최종 감사결과 통보 : '21. 1월
- '21년도 제1차 충남연구원 정기이사회 종합감사 보고 : '21. 3월